

의 결



2024. 11. 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⁴⁰⁾하여야 하고, 소방청의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 제5조 제2호는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긴급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응급환자 등의 이송을 위하여 응급의료헬기를 운항⁴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부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 적용되는 소방청의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도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긴급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응급환자 등의 이송을 위하여 응급의료헬기를 운항할 수 있는 응급의료헬기 출동기준에 포함하고 있다⁴²⁾.

4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처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처리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41)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 제5조(응급의료헬기 출동기준) 응급환자 등의 이송을 위하여 응급의료헬기를 운항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긴급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2)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 (소방청, 2019)

I. 개요

2. 적용 범위

- 이 매뉴얼은 응급의료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부기관,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 등의 운영자와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적용함

III. 응급의료헬기 현장대응 프로토콜

4. 출동기준

-> 응급환자 등의 이송을 위하여 응급의료헬기를 운항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긴급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긴급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119응급의료헬기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범위 및 자격 등에 대해 살펴보면,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은 ‘의료기관’이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등으로, ‘의료진’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⁴³⁾.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실제 긴급한 환자의 이송을 위해 119응급의료헬기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 응급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119응급의료헬기의 출동을 요청할 권한은 해당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 또는 처치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담당한 담당 주치의나 당직의 등의 의료진이 보유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최소한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⁴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⁴⁵⁾.

한편,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에 따르면 응급의료 전용 헬기 ‘출동 요청의 자격’을 ‘환자를 상담, 진료 또는 처치한 자’로 정의하고, ‘환자를

43)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 (소방청, 2019)

I. 개요

4. 용어 정의

- “응급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하며,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한다.
- “의료진”이란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단위를 말한다.

44) 119응급의료헬기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진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위임의 내용이 외부로의 의사표시를 포함해야 하며, 반드시 명시적·구체적 의사표시일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포괄적·묵시적 의사표시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5)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만 해당하면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 환자나 다른 의료진이 담당하는 환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헬기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현행 응급이송체계 운영에 큰 혼란과 지장을 초래하거나 응급환자의 생명보호체계 등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담, 진료 또는 처치하지 않은 자와 일반인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진의 자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내용이 당연하고 합리적인 규정으로서 본건의 판단에 있어 참고할 만하다⁴⁶⁾.

46)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2016)

4. 일반운항지침

나. 출동의 요청과 결정

1) 출동의 요청

가) 출동 요청의 자격

- (1) 출동 요청은 119 구급대원, 소방상황실, 해경상황실, 경찰청 상황실, 군 상황실,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및 보건진료원으로서 환자를 상담, 진료 또는 처치한 자가 할 수 있으며, 환자를 상담, 진료 또는 처치하지 않은 자와 일반인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⁵²⁾.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서의 ‘특혜’란 법령 등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인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피신고자6 〇〇〇 및 피신고자7 〇〇〇은 소방청의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 및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 등에서 출동기준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긴급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의료진이 119응급의료헬기의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임에도,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전화한 상대방이 의료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인지 여부나 위 매뉴얼과 지침 등에서 정하는 출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특정 정당에서 병원 간 전원을 위한 헬기 이송을 원한다는

52)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달을 받고 119응급의료헬기 출동을 결정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결정은 통상의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인을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위반으로 판단된다.

-
- 53) 소방청의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 및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 등에는 119응급 의료헬기 출동을 요청할 권한을 가진 의료진의 범위를 명시하는 규정이나, 헬기 등의 출동 요청을 받은 상황실 담당자가 출동을 요청한 의료진에 대해 주치의 여부 등 환자와의 관계나 의료기관의 공식적인 요청 여부 등 정상적인 119응급의료헬기 요청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 및 의료기관의 공식적 요청이 아님에도 개인적 사유로 소방 본부의 병원 간 전원 조정업무 핫라인 번호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앞으로도 본 사건과 유사하게 응급환자의 진료·이송 등과 관련 없는 의료진이 의료적 판단이 아닌 개인적 사유로 핫라인 회선을 무단 사용하여 119응급의료헬기의 출동을 요청하는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청의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 및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 등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